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조사결과 공개 〉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09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조사결과 공개	2
※ 참고자료	7
1.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	7

I. 제안경위

2025년 4월 7일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특성상 개체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보전·보호 측면에서 조사 결과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 1천여 마리가 폭설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에 갇혀 폐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 개체수의 변동과 서식지 환경 특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조사결과 공개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6조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① (생략)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 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 ----- ----- ----- ----- ----- . 이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과 II 급으로 나누어 지정·관리되고 있음¹⁾²⁾.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	무척추	식물	해조류	고등균류
I급	14	16	2	11	8	4	13	-	-
II급	6	53	6	18	21	28	79	2	1
합 계	20	69	8	29	29	32	92	2	1

※자료: 환경부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 및 종 증식·복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과 정밀한 서식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³⁾,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2) <참고자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멸종위기 야생생물>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

이 중 서식실태조사와 관련하여서는 '25년도에도 정기조사(전국분포 조사)와 관찰종 정밀조사가 실시된 바 있음.

[멸종위기 야생생물 실태조사 현황]

구분	<정기조사>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분포조사	<정밀조사> 관찰종 정밀조사
목적	· 멸종위기종의 서식실태를 파악하고 보전 및 복원 정책의 기반자료 확보	· 멸종위기종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기반데이터 수집
관련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조사 대상	· 9개 분류군 · 멸종위기종 282종 대상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 무척추동물, 식물, 해조류, 균류	· 7개 분류군 · 관찰종 56종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 무척추동물, 식물
조사 항목	· 서식처 공간정보(행정구역, GPS 정보, 상세 위치), 서식환경(고도, 방위, 경사, 지형특성 등), 서식실태(개체수, 분포 형태 등), 서식처 및 개체군 위협요인 등	· 좌동
조사 방법	· 전국단위(5년/주기) 조사 · 좌표(GPS) 기반, 개체 서식 유무 확인 ※ 일부 분류군 개체군 변화 양상 파악	· 전국단위(5년/주기) 조사+분석 · 개체군 변화, 위협요인, 분포·확산 예측, 유전적 다양성 분석 등

※자료: 환경부

한편, '23~'24년 겨울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 1천여 마리의 폐사 사건의 발생을 계기⁴⁾⁵⁾로, 이들의 개체수 변동과 서식지 환경 특성에

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조선일보, “5개월 간 ‘천연기념물’ 산양 750마리 폐죽음, 왜?”(2024.04.15.)

5) 다만, 국가유산청-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양보호대책의 결과 2024~2025년 겨울에는 동절기 산양 폐사 개체수가 예년 평균 수준으로 회복됨(자료: ‘정부 합동보호대책 추진으로 천연기념물 산양 폐사 개체수 평균 수준 회복’ 정부 보도자료, 2025.04.10.).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실태조사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 해당 종의 서식환경, 개체 수 변동 추이 및 감소원인 등의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환류와 국민의 알권리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법 제6조제2항은 신설 당시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규정되었던 ‘관찰종’ 지정·조사를 법률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서,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교란종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생물종에 대한 관리를 위한 조항이고⁶⁾,

환경부에서도 현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사결과 공개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은 동조 제1항 단서로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환경부는 개정안의 ‘개체수’ 변동 추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6) 법 제6조제2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제1906911호)을 대안(의안번호 제1909551호)에 반영하여 본회의 의결(2014.2.28.) 후 시행(2015.3.25.)된 법률 제12521호에서 신설된 것으로, 당시 대안반영폐기된 정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는 해당 조항에 대해 현행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관찰종 지정·조사내용을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교란종 등과 같이 보호종 또는 관리대상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생물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술됨.

개체수 숫자가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하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성과 조사 시점에 출현 여부 등에 따라 서식지에서 발견되는 개체수가 달라지며 발견되는 개체수도 추정치이므로 ‘개체 변동 추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멸종위기 야생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1. 공통 적용기준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

나. 포유류, 조류, 양서류·파충류,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 및 표본을 포함한다.

다. 육상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種子, 씨앗), 구근(球根, 알뿌리), 인경(鱗莖, 비늘줄기), 주아(珠芽, 살눈),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라. 해조류, 고등균류, 지의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포자 및 표본을 포함한다.

2. 포유류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번호	국명	학명
1	늑대	<i>Canis lupus coreanus</i>
2	대륙사슴	<i>Cervus nippon hortulorum</i>
3	무산쇠족제비	<i>Mustela nivalis</i>
4	물범	<i>Phoca largha</i>
5	반달가슴곰	<i>Ursus thibetanus ussuricus</i>
6	붉은박쥐	<i>Myotis rufoniger</i>
7	사향노루	<i>Moschus moschiferus</i>
8	산양	<i>Naemorhedus caudatus</i>
9	수달	<i>Lutra lutra</i>
10	스라소니	<i>Lynx lynx</i>
11	여우	<i>Vulpes vulpes peculiosa</i>
12	작은관코박쥐	<i>Murina ussuriensis</i>
13	표범	<i>Panthera pardus orientalis</i>
14	호랑이	<i>Panthera tigris altaica</i>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번호	국명	학명
1	담비	<i>Martes flavigula</i>
2	물개	<i>Callorhinus ursinus</i>
3	살쾨	<i>Prionailurus bengalensis</i>
4	큰바다사자	<i>Eumetopias jubatus</i>
5	토끼박쥐	<i>Plecotus ognevi</i>
6	하늘다람쥐	<i>Pteromys volans aluco</i>

3. 조류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번호	국명	학명
1	검독수리	<i>Aquila chrysaetos</i>

2	고니	<i>Cygnus columbianus</i>
3	넓적부리도요	<i>Eurynorhynchus pygmeus</i>
4	노랑부리백로	<i>Egretta eulophotes</i>
5	느시	<i>Otis tarda</i>
6	두루미	<i>Grus japonensis</i>
7	먹황새	<i>Ciconia nigra</i>
8	빨제비갈매기	<i>Thalasseus bernsteini</i>
9	저어새	<i>Platalea minor</i>
10	참수리	<i>Haliaeetus pelagicus</i>
11	청다리도요사촌	<i>Tringa guttifer</i>
12	크낙새	<i>Dryocopus javensis</i>
13	호사비오리	<i>Mergus squamatus</i>
14	흑고니	<i>Cygnus olor</i>
15	황새	<i>Ciconia boyciana</i>
16	흰꼬리수리	<i>Haliaeetus albicilla</i>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번호	국명	학명
1	개리	<i>Anser cygnoides</i>
2	검은머리갈매기	<i>Larus saundersi</i>
3	검은머리물떼새	<i>Haematopus ostralegus</i>
4	검은머리축새	<i>Emberiza aureola</i>
5	검은목두루미	<i>Grus grus</i>
6	고대갈매기	<i>Larus relictus</i>
7	긴꼬리딱새	<i>Terpsiphone atrocaudata</i>
8	긴점박이올빼미	<i>Strix uralensis</i>
9	까막딱다구리	<i>Dryocopus martius</i>
10	노랑부리저어새	<i>Platalea leucorodia</i>
11	독수리	<i>Aegypius monachus</i>
12	따오기	<i>Nipponia nippon</i>
13	뜸부기	<i>Gallicrex cinerea</i>
14	매	<i>Falco peregrinus</i>
15	무당새	<i>Emberiza sulphurata</i>
16	물수리	<i>Pandion haliaetus</i>
17	벌매	<i>Pernis ptilorhynchus</i>
18	붉은가슴흰죽지	<i>Aythya baeri</i>
19	붉은배새매	<i>Accipiter soloensis</i>
20	붉은어깨도요	<i>Calidris tenuirostris</i>
21	붉은해오라기	<i>Gorsachius goisagi</i>
22	빨쇠오리	<i>Synthliboramphus wumizusume</i>
23	빨종다리	<i>Galerida cristata</i>
24	새매	<i>Accipiter nisus</i>
25	새호리기	<i>Falco subbuteo</i>
26	섬개개비	<i>Locustella pleskei</i>

27	솔개	<i>Milvus migrans</i>
28	쇠검은머리쭈새	<i>Emberiza yessoensis</i>
29	쇠제비갈매기	<i>Sterna albifrons</i>
30	수리부엉이	<i>Bubo bubo</i>
31	시베리아흰두루미	<i>Grus leucogeranus</i>
32	알락개구리매	<i>Circus melanoleucos</i>
33	알락꼬리마도요	<i>Numenius madagascariensis</i>
34	양비둘기	<i>Columba rupestris</i>
35	올빼미	<i>Strix aluco</i>
36	재두루미	<i>Grus vipio</i>
37	잣빛개구리매	<i>Circus cyaneus</i>
38	조롱이	<i>Accipiter gularis</i>
39	참매	<i>Accipiter gentilis</i>
40	청호반새	<i>Halcyon pileata</i>
41	큰고니	<i>Cygnus cygnus</i>
42	큰기러기	<i>Anser fabalis</i>
43	큰덤불해오라기	<i>Ixobrychus eurhythmus</i>
44	큰뒷부리도요	<i>Limosa lapponica</i>
45	큰말뚝가리	<i>Buteo hemilasius</i>
46	팔색조	<i>Pitta nympha</i>
47	항라머리검독수리	<i>Aquila clanga</i>
48	흑기러기	<i>Branta bernicla</i>
49	흑두루미	<i>Grus monacha</i>
50	흑비둘기	<i>Columba janthina</i>
51	흰목물떼새	<i>Charadrius placidus</i>
52	흰이마기러기	<i>Anser erythropus</i>
53	흰죽지수리	<i>Aquila heliaca</i>

4. 양서류·파충류, 5. 어류, 6. 곤충류, 7. 무척추동물, 8. 육상식물, 9. 해조류, 10. 고등균류 (생략)